

제 20 장 협력

제 20.1 조 목적

이 장의 목적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하는 긴밀한 협력의 수립을 촉진하는 것이다.

- 가. 이 협정에 따른 기회와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
- 나. 양자적, 지역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것이다.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는 것
- 라. 생산적 상승효과를 제고하는 것, 새로운 무역 및 투자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, 그리고 경쟁력 및 혁신을 증진하는 것
- 마. 양 당사국간 협력 관계를 고려해 협력활동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, 그리고
- 바. 국제 시장에서 양 당사국과 그 상품 및 서비스의 비중 확대를 장려하는 것

제 20.2 조 일반규정

1. 양 당사국은, 이 협정의 목적과 원칙을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수단으로서, 특히 경제적, 통상적, 기술적 협력에 주의하여, 모든 형태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.
2.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간 협력은 이 협정의 그 밖의 장과 그 밖의 양자 협력 체계에 규정된 양 당사국간 협력 및 협력활동을 보완할 것이다.

제 20.3 조

경제 협력

1. 양 당사국은 경제통합 과정을 강화하고 상업적 교역을 증대하기 위해 양 당사국간 협력 수단 및 체계의 활용을 장려할 것이다.

2. 경제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가.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위해 이미 발효 중인 기존의 협정 또는 약정에 대한 양 당사국간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는 것, 그리고

나. 양 당사국간 무역 및 경제 관계를 진전시키고 강화하는 것

3.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을 적절하게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.

가. 정책 대화, 그리고 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증진하고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견해의 정기적 교환

나. 양 당사국에 의해 확인된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, 경제적 관심이 있는 연구와 기술 사업의 공동 추진

다. 중요한 경제 및 무역 문제 그리고 경제적 협력 증진의 모든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정보제공

라. 관련 기관의 지식 및 보조를 통해 다른 쪽 당사국을 방문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기업인과 통상사절단에게 지원 및 편의 제공

마. 양 당사국 각 업계 간 대화 및 경험 교환 지원

바.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협력, 상품 및 서비스 무역, 그리고 투자의 기회를 확인하는 체계의 수립 및 개발, 그리고

사.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서 공공 그리고/또는 민간 부문의 역할 활성화 및 촉진

제 20.4 조 중소기업¹⁾ 협력

양 당사국은 관련 민간 및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증진할 것이다. 협력은 그 중에서도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.

- 가. 제휴관계를 조성하고 생산망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를 고안하고 개발하는 것
- 나. 상호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무역, 투자 및 중소기업의 가능한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양 당사국의 경제 행위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
- 다. 의무적 절차, 무역 진흥 네트워크에의 향상된 접근, 사업 협의체, 사업 협력 수단에 대한 정보 및 중소기업 수출자를 위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의 교환 및 대화를 촉진하는 것
- 라.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수출자를 위한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증진하는 것
- 마. 중소기업에 특히 초점을 둔 기업 일반의 발전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공기관 간 경험의 교환을 증진하는 것, 그리고
- 바. 환경 관리, 정보 및 통신 기술, 나노공학, 생명공학, 재생가능 에너지와 같은 측면에서, 그리고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

제 20.5 조 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어류와 수산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.

1) 이 조의 목적상, 페루에 대해서는, “중소기업”은 페루의 국내 법령에 정의된 바와 같은 미소(微小)기업을 포함한다.

2. 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인간의 직접 소비를 증대할 목적으로 종자의 개발 및 수생생물종의 가공을 위한 연구 및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것, 그리고
 - 나. 책임 있는 어업이라는 접근 방식에 따라 정보교환 및 천연자원의 보전을 촉진하는 것

3.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해 수산업 및 양식업을 발전시킬 것이다.
 - 가. 수산업 및 양식업 개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을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는 것
 - 나. 식량안보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수생자원의 소비와 더불어 인간의 직접 소비를 위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증진하는 것
 - 다. 불법·비보고·비규제 어업을 방지하는 것
 - 라. 양식업 분야에서 호혜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
 - 마. 수산업, 양식업 및 수산 자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. 그 목적상, 양 당사국의 해당 기관은 적절한 접촉 부서를 구성할 것이다.
 - 바. 이 협정 발효 후 협상이 시작될 수산협력약정²⁾을 통해,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 당사국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최적화된 활용을 증진하는 것³⁾
 - 사. 양 당사국간 수산업 개발 증진을 위해 공무원, 과학자, 기술자 및 연수생을 교환하는 것
 - 아. 공동으로 조직된 과정, 방문, 세미나 및 워크숍에의 참여를 통해 양 당사국의 국가공무원과 수산업계 구성원의 훈련을 증진하는 것
 - 자. 양 당사국의 연구기관 간 제휴관계 및 교류 구축, 그리고
 - 차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

2) 수산협력약정은 특히, 무역원활화에 대한 양 당사국간 협력과, 수산자원, 수생생물종 및 양식업 분야에서의 양 당사국의 연구 증진에 대한 양 당사국간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.

3) 양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제 20.6 조

관광 협력

관광이 양 당사국간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를 위한 중요한 산업임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

- 가. 각 당사국으로의 입국 방문자 증가를 위해 관광 개발 및 증진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.
- 나. 양 당사국의 인터넷 사이트 간 연결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.
- 다. 양 당사국의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, 양 당사국의 관광 당국 및 기관이 관광 훈련 및 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할 것이다.
- 라. 양 당사국의 관광 당국 및 기관 간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해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관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운동에 있어 협력할 것이다.
- 마. 양 당사국 영역에서 관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.
- 바. 관광 및 관련 분야에서의 관련 통계, 홍보자료, 정책 및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. 그리고
- 사. 관광 및 교통 당국과 기관이 양 당사국간 항공 연결을 개선하도록 장려할 것이다.

제 20.7 조

임업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임업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것이다.
2.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을 적절하게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.
 - 가. 관련 지표의 개발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이행

- 나. 산림자원의 관리, 개발 및 이용
- 다. 산불 및 병충해 방지 및 통제를 포함한 산림보호
- 라.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한 공동조치 증진
- 마. 조림 및 목재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
- 바. 임산물의 가공, 공급 및 무역
- 사. 친환경임업 기술 개발 및 산림 생태계 보전
- 아. 연구개발, 교육 및 훈련, 그리고
- 자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

제 20.8 조

에너지 · 광물 자원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에너지 · 광물 자원 분야에서의 더 강력하고,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제휴관계 구축의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라 협력을 증진한다.

2. 에너지 · 광물 자원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.

- 가. 원유와 가스의 탐사, 채굴 및 생산과 같은 상류부분 활동
- 나. 원유 정제, 석유화학 공정, 가스의 액화,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송 및 유통과 같은 하류부분 활동
- 다. 광물자원의 탐사, 채굴, 생산, 제련, 정제, 가공, 운송 및 유통과 같은 활동
- 라. 광업 활동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영역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측량, 채굴 및 환경 · 지질학적 활동에 적용되는 지도 제작 활동(측지학, 위성사진, 원격 감지 및 지리정보 시스템)
- 마. 광업 관련 환경적 책임의 복구를 위한 광업 기술의 교환
- 바. 광업의 환경적 문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
- 사. 양 당사국간 에너지 · 광물 자원 협력에 대한 사업 관계를 장려하

고 촉진하기 위한 활동, 그리고
아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

3. 양 당사국은 에너지·광물 자원 분야에서 다음 주제에 대해 대중에게 자유롭게 공개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.

가. 국내 및 외국 기업을 위한 투자 현황 자료

나. 입찰 및 채굴사업과 같은 투자 기회

다. 지질 자료/정보

라. 관련 법, 규정 및 정책, 그리고

마. 광해방지기술 및 광산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와 지역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사안

4. 각 당사국은 에너지·광물 자원에 대한 자국의 법과 규정이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한다.

5. 가능한 범위에서, 각 당사국은 에너지·광물 자원에 관한 협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규정을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.

6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 규정에 대해 이전에 통지 받았는 지와 관계없이 에너지·광물 자원 협력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질의에 답변하고 정보를 제공한다.

7.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통보 또는 정보는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 지와 무관하다.

8. 양 당사국은

가. 에너지·광물 자원 분야에 관여하는 자국 정부기관, 공공조직, 연구소, 대학 및 기업을 통해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분야 간 협력을 증진한다.

나.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양자관계를 위해, 에너지·광물 자원 분야의 투자를 포함한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사업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한다. 그리고

다.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공동위원회와 같이 이미 조직된 협력체와 협정에 관련된 활동을 인정하고 촉진한다.

9. 양 당사국은 연구자,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 및 교류를 촉진하며 또한 공동 포럼, 세미나, 학술 토론회, 학회, 전시회 및 연구 사업을 증진한다.

제 20.9 조 과학·기술 협력

1. 양국 각각의 경제에서의 과학·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과학·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할 것이다.

2.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을 적절하게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.

가. 필요한 경우, 설비 공유, 비밀이 아닌 과학·기술자료 교환 및 제공과 더불어 과학 표본의 교환을 포함하는 공동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

나. 과학자, 연구원,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

다. 해당 활동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를 포함해, 세미나, 학술토론회, 학회 및 그 밖의 과학·기술 관련 회의의 공동 개최

라. 양 당사국이 그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할 경우, 기존의 국가 계획 또는 정책에 따른 공동 과학·기술 연구 활동 증진

마. 과학·기술 관련 관행, 정책, 법, 규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교환

바. 과학·기술 활동의 결과로서,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를 위한

협력, 그리고

사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과학·기술 협력

3. 특히 첨단 과학 또는 핵심 기술 영역에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.

가. 생명공학

나. 나노공학

다.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

라. 신소재

마. 전자정부

바. 제조기술

사. 환경기술, 그리고

아. 과학·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시스템

제 20.10 조

정보·통신기술 협력

1. 국내적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·통신기술(이하 “ICT”이라 한다) 및 ICT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업 관행이 민간 부문의 주도로 급속히 발전하였음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ICT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해 ICT 및 ICT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정책 사안에 대한 대화 증진

나.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력 증진

다. 정보·통신기술 관련 국제 협의체에서의 협력 제고, 그리고

라. 그 밖의 적절한 협력활동의 수행

3.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 분야에서 협력을

장려할 것이다.

- 가. 전자정부에 관한 사이버 기반시설 및 정책 사안
- 나. 공개 키 기반 구조의 상호 운용성
- 다.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, 처리, 관리, 유통 및 무역
- 라. 양 당사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과학·기술 협력
- 마. 정보기술단지의 연구, 개발 및 관리
- 바.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
- 사. 양 당사국이 그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, 네트워크와 통신의 연구, 개발 및 배치
- 아. 국제시장에서의 사업기회, 그리고
- 자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

제 20.11 조 해상 운송 협력

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해상 운송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.

- 가. 해상 운송이나 물류 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한 접촉 부서의 구성
- 나. 항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기술적 협력 마련
- 다. 상업선박의 선원 학생들의 훈련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개발, 그리고
- 라. 선박 통항관리 서비스를 포함, 선박 해상 운송과 관련된 기술 원조와 역량 강화 활동 마련

제 20.12 조 문화 협력

1. 문화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문화 협력을 위한 기존의 유효한 협정 및 약정의 존중, 그리고

나. 양 당사국간 문화 교류 증진

2. 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각 공동제작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양 당사국간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, 양 당사국은 시청각 분야의 공동제작협정을 고려하고 협상하는데 동의한다.

3. 제2항에서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은, 일단 체결되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. 공동제작협정의 세부사항은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협상될 것이며,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*문화체육관광부* 및 *방송통신위원회*이며, 페루에 대해서는 *교육부*이다

4. 제3항에서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공동제작 사업은 각 당사국 영역 내의 국내 제작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각 당사국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정부지원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부여 받는다.

5. 양 당사국은 양국 각각의 법령과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장에서의 자국 약속에 포함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, 환경 및 문화 경관을 포함한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최적 관행의 교환을 장려한다.

6. 양 당사국은 양국 문화유산에 대한 불법거래를 확인하고, 원상태로 복원하며, 방지하기 위해 양 당사국 외교경로를 통해 정보를 교환할 것을 약속한다.

제 20.13 조

농업 협력

농업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플랜테이션 작물을 포함한 농업연구, 소규모 농업 개발, 농업용 수자원의 보존 및 관리,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및 우수농업관행의 적용 등을 포함하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사업을 위한 제휴 관계의 구축을 증진하는 것
- 나. 양 당사국간 농산물 교역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, 그리고
- 다. 축산물과 농업 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선도 생산자, 기술자 및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

제 20.14 조

협력위원회 및 접촉 부서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를 설립한다.
2. 협력위원회는
 - 가. 양 당사국이 합의한 협력 사업의 이행에 있어, 그 경과를 감독하고 평가한다.
 - 나. 그 과업의 수행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한다.
 - 다. 양 당사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, 이 장에 따른 협력활동에 대해 권고한다, 그리고
 - 라. 양 당사국으로부터의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이 장의 운용과 그 목적의 적용 및 달성을 검토한다.
3.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양 당사국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외교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.
4. 양 당사국은 가능한 협력활동에 관한 연락을 원활하게 할 접촉 부서

를 지정할 것이다. 그 접촉 부서는 이 장의 운용을 위해 정부기관, 기업부문의 대표자, 그리고 교육 및 연구기관과 협업할 것이다.

제 20.15 조 분쟁해결

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23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